-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- **제62조(녹색기술・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)** ① 정부는 녹색기술・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・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·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,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63조(정보통신 기술·서비스 시책) ①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, 에너지를 절약하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·서비스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
 - 2.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 보급
 - 3.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
 - ② 정부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·영상회의·원격교육·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보통신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·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64조(순환경제의 활성화)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,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(이하 이 조에서 "순환경제"라 한다)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
 - 2.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
 - 3. 폐기물의 선별・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 - 4.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, 식물,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・활용에 관한 사항
 - 5.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

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

- 제65조(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 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(이하 "실천연대"라 한다)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실천연대는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.
 - ③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
 - 2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
 - 3.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
 - 4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
 - 5.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
 - 6.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, 녹색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

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의 구성·운영, 제4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6조(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·소비 문화의 확산)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·소비·운반 및 폐기 (이하 "생산등"이라 한다)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·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·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·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,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④ 정부는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(이하 "녹색제품"이라 한다)의 사용·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·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·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 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- 제67조(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・홍보)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・소비・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(이하 "녹색생활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・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, 교육・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 - 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 - 1.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제도
 - 2. 승용 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
 - 3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
 - 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·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학교교육을 강화하고, 일반 교양교육, 직업교육,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·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⑥ 정부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·방송·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·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.
 - ⑦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·방영하고 기후위기 관련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8조(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·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과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시・도계획 또는 시・군・구계획의 수립・시행 지원
- 2.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시행 지원
- 3.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 확산
- 4.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

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의 출연금
- 2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- 3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4.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- 5.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
- 6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(豫受金)
- 7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
- 8.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
-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·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 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70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- 1.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・운영
- 2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·노동·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
- 3.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·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·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 ·창출 지원
- 4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
- 5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 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
- 6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・홍보
- 7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

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8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9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- 10.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- 11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
- **제71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**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「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법」에 따른 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.
- 제72조(기금의 운용・관리)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・관리한다.
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.
 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.
 - ④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「국가재정법」제7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.
 -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 -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3조(기금의 회계기관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 입징수관・기금재무관・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,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,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업무를,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,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.
- 제74조(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)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.

제11장 보칙

- 제75조(국제협력의 증진) ① 정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, 기술협력 및 표준화, 공동조사·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76조(국제규범 대응)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
 - ·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·조사·분석하여 관련 제도·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·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·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77조(국가보고서 등 작성) ① 정부는 「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」(이하 "협약"이라 한다) 및 협정에 따라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·갱신할 수 있다.

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
- 2. 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에 관한 보고서
- 3. 협정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
- 4. 협정에 따른 적응보고서
- 5. 그 밖에 협약 및 협정에 따른 보고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
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8조(국회 보고 등)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
 - 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·도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79조(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)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0조(청문)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1.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
 - 2. 제2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취소
 - 3.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
 - 4. 제6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취소
 - 5.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
- **제81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**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**제82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위원회, 지방위원회, 제19조제1항・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・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
 - 2.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제8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 - 2.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(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정・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.

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